



# 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

- 환경부 제공 -

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29일 제품의 포장 재질 ·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판매자 외 제조 · 수입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2년간 유예, 시행 후 제작 및 수입한 제품들에 관련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.

- 편집자 주 -

## 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[시행 2024. 4. 30.] [환경부령 제984호, 2022. 4. 29. 일부개정]

###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[표 1]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한다.

제조 · 수입 · 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 ·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한다.

### 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조(적용 범위)

-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.

제 4조(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)

- ①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.
- 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 7조 제 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[표 1]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11. 17.]

제 4조의 2(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)

- ①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 3조 및 제 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 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.

[신설 2016. 3. 16.]

[표 1]

제품의 종류		기준		
		포장공간비율	포장횟수	
1. 단위 제품	가. 음료식품류	가공식품	15% 이하	2차 이내
		음료	10% 이하	2차 이내
		주류	10% 이하	2차 이내
		제과류	20% 이하 [데코레이션 케이크(decoration cake)는 35% 이하]	2차 이내
		건강기능식품	15% 이하	2차 이내
	나. 화장품류	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	15% 이하	2차 이내
		그 밖의 화장품류(방향제를 포함한다)	10% 이하(향수 제외)	2차 이내
	다. 세제류	세제류	15% 이하	2차 이내
	라. 잡화류	완구·인형류	35% 이하	2차 이내
		문구류	30% 이하	2차 이내
		신변잡화류(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)	30% 이하	2차 이내
	마. 의약외품류	의약외품류	20% 이하	2차 이내
	바. 의류	와이셔츠류·내의류	10% 이하	1차 이내
사. 전자제품류	차량용 충전기, 케이블, 이어폰·헤드셋, 마우스, 근거리 무선통신(블루투스) 스피커(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)	35% 이하	2차 이내	
2. 종합제품	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류, 세제류, 완구·인형류, 문구류, 신변잡화류, 의약외품류, 와이셔츠류, 내의류	25% 이하	2차 이내	



[표 1]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 1] 비고에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 1호 및 제 2호의 제품을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은 50% 이하, 포장 횡수는 1차 이내로 한다. 다만, 가로, 세로,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### 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[표 1] 비고 제 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
## (사)한국포장협회 서적 안내



### 신·식품포장용 필름

「신·식품포장용 필름」-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」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, 플라스틱의 성질, 필름제조법, 필름의 성질,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, 식품보존성,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, 포장과 환경문제,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.

· 가격 : 20,000원



### (사)한국포장협회 30년사

(사)한국포장협회 30년의 역사와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발행된 한국포장협회 30년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포장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조망한 한편의 책이다. 책은 발간사와 기념사 및 축사에 이어 크게 현황, 연혁화보, 통사, 부록으로 나뉘어 있다.

· 가격 : 50,000원